

# 존경하는 고객님께,

ABL생명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BL생명'은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상징하며, 선진적인 상품과 디지털 고객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954년 출범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생명보험사로서, 한국 생명보험시장에서 60년 넘게 쌓아온 경영 노하우, 글로벌 보험 그룹의 일원으로서 축적한 선진 상품 개발 기술,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된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113만여 명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설계사는 물론 콜센터(1588-6500) 또는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버·모바일센터(cyber.abllife.co.kr)와 화상고객상담 서비스 'A-View'를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시예저치앙



#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 보험약관의 구성

## 1. 가이드편

####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생소한 보험관련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주요용어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약관주요조항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금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 서명등 계약자 의무사항과 보험계약, 유지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약관에도 준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계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해지화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거치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에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가입시점보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상승할 경우 계약자적립금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시장가격조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거치형) "별표6-해지환급금의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만, 거치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합니다.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아래 내용은 주요 분쟁시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 1.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같이 단기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장기노후생 활자금 마련이 주목적인 연금보험입니다.

# 2.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거치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에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 장가격조정률 (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가입시점보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상승할 경우 계약자적립금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시장가격조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치형 약관 '(별표6) 해지환급금의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상품은 확정금리를 적용하나요?

-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은 이율확정기간 중에는 매월 1일과 16일에 아래와 같이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 율("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을 적립이율로 하며, 이율확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합 니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 니합니다

또한, 거치형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은 이율확정기간과 관계 없이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사이율을 적립이율로 합니다

| 보험형태      | 보험형태 |
|-----------|------|
| 5년 이율확정형  | 5년   |
| 10년 이율확정형 | 10년  |

## 4. 이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연4회에 한하여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거치형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US\$100 이상 US\$10 단위로 하며, 적립형의 경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다만, 계약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게 발생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5. 이 상품에서 생활자금이란 무엇인가요?

- 거치형 계약 중 계약체결시점에 생활자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율확정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하며, 계약자는 생활자금지급을 신 청할 때 매월지급 또는 매년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지급을 선택한 경우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의 보험계약해 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5년 이율확정형 60회지급, 10년 이율확정형 120회 지급)
- 매년지급을 선택한 경우 계약일 이후 만 1년 경과시점의 보험계약해당 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5년 이율확정형 5 회지급, 10년 이율확정형 10회 지급)
- 생활자금은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 금이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지급주기(매월, 매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니다
- 보험수익자가 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 미지급 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따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 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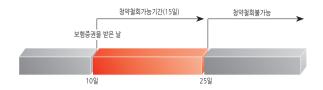
## 3. 계약의 무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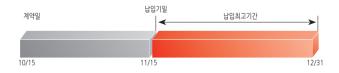


###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 7.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00, 8층 (숭인동, ABL생명빌딩)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2동 1383번지 ABL생명빌딩 8층)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 TEL 1588-4404,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10.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이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강할 수 있습니다



#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이용안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변경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대출 신청,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연중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이용방법: http://cyber.abllife.c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지문, 홍채). 비밀번호, 패턴 등을 설정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부헌가인금액]

.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보험금]

.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牛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 [보험약과]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됩니다

####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 적용)

#### [위험보험료]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장받는 재해장해보험금의 재워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맥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약관주요조항안내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적립형)

| 【보험금의 지급사유】   |
|---|
| •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br>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 제 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1<br>제 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5  |
| 【보험금의 청구】   |
| •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br>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br>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
| 제 10조 [보험금의 청구]17   |
| 【계약전 알릴 의무】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br>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br>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br>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br>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 제16조 [계약전알릴의무]21<br>제17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22   |
| [청약의 철회]  |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br>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br>내용은 이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 제21조 [청약의 철회] 28  |
| 【계약의 무효】  |
| •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br>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 제23조 [계약의무효]  |
| [계약의부활]   |
|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래<br>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2

# 약관주요조항안내 (무)보너스주는 달러연금보험(거치형)

| <b>【보험금의 지급사유</b> 】   |
|---|
| <ul> <li>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어<br/>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li> </ul>  |
| 제 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18<br>제 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122   |
| 【보험금의 청구】   |
| •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br>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br>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
| 제 10조 [보험금의 청구] 124   |
| [계약전 알릴의무]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br>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br>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br>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br>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 제16조 [계약전알릴의무]128<br>제17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129   |
| [청약의 철회]  |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br>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br>내용은 이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 제21조 [청약의 철회]134  |
| [계약의 무효]  |
| •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br>모호 사하에 대해서는 이래 조항은 항이하세요   |

제23조 [계약의 무효] ...... 138

# 고객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 정보"라 한다)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본인 정보의 제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라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1600-1533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1577-1006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www.allcredit.co.kr)
-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대한 상기 고객권리 행사 방법
    - 방문: 본사 및 점포/지급창구 내방, 전화: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www.abllife.co.kr
  -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 당사 소비자부/정보보호인: 02-3787-7482~7486, 협회: 02-2262-6600, 금융감독원: 02-3145-5114
-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안내문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 보험약관

| •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
|-----------------------------|
| (적립형) 1                     |
| •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
| (거치형) 109                   |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171           |
|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 177                         |
|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거치형)       |
| 209                         |
|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 245  |
|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거치형) ·· 271 |
|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즉시형)305     |
|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거치형)327     |
|                             |
|                             |
|                             |
| 관련 법규 조항 정리 ····· 361       |
| 시체브의이 선명도 398               |

# 무배당 보너스주는 달러연금보험 (적립형)

#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적립형)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 제 1조[목적]               | 05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     | 제 3조[통화]               | 11  |
|     | 제 4조[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     |
|     |                        |     |
|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
|     |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11  |
|     | 제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2  |
|     | 제 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5  |
|     | 제 8조[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 16  |
|     | 제 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7  |
|     | 제10조[보험금의 청구]          |     |
|     |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18  |
|     |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20  |
|     |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     |
|     | 제14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 21  |
|     | 제15조[대표자의 지정]          |     |
|     |                        |     |
| 제3관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
|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 21  |
|     |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 |
|     |                        |     |
|     |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 24  |

| 제4관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
|-----|---|----|
|     |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25 |
|     | 제20조[계약의 체결]                            | 27 |
|     | 제21조[청약의 철회]                            | 28 |
|     |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30 |
|     | 제23조[계약의 무효]                            | 32 |
|     | 제24조 [ 계약내용의 변경 등 ]                     | 33 |
|     | 제25조 [ 보험나이 등 ]                         | 35 |
|     | 제26조[계약의 소멸]                            | 36 |
|     |   |    |
| 제5관 | 보험료의 납입                                 |    |
|     |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    |
|     | 개시 ]                                    | 37 |
|     |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 39 |
|     |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
|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    |
|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
|     |   | 40 |
|     |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                  |    |
|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2 |
|     | 제32조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    |
|     | 게 극의 국 글 구설(요락외국)]                      |    |
|     |   |    |
| 제6관 |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
|     |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43 |
|     |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
|     |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4 |
|     | 제36조[공시이윸의 적용 및 공시]                     |    |

|     | 제37조 [ 해지환급금 ] ··································· | 46 |
|-----|--|----|
|     |  | 48 |
|     | 제40조 [ 배당금의 지급 ]                                   | 49 |
|     |  |    |
|     |  |    |
| 제7관 | 분쟁의 조정 등   |    |
|     | 제41조 [ 분쟁의 조정 ]                                    | 49 |
|     | 제42조 [ 관할법원 ]                                      |    |
|     | 제43조 [ 소멸시효 ]                                      |    |
|     | 제44조 [ 약관의 해석 ]                                    | 50 |
|     |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                              | 의  |
|     | 효력 ]   |    |
|     |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
|     | 제47조 [ 개인정보보호 ]                                    | 51 |
|     | 제48조 [ 준거법 ]                                       | 52 |
|     |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     |  |    |
|     |  |    |
|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53 |
|     |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 Ł  |
|     |  | 56 |
|     | [별표3] 재해분류표  | 61 |
|     | [별표4] 장해분류표  | 63 |
|     |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
|     | 계산 1   | 06 |

#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적립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 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연 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 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 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기 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 여부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무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 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 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 : 제8조(납입완료보 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납입완 료보너스를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추 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 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 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1)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일부 터 종신까지
    - (2)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

## 급일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5.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 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 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 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무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합니다. 다만, '(3)'에서 정하 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 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1회에 US\$100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 구하지 않습니다.
-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 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 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말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1회에 US\$100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 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 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 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 다. 또한,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 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 용어해설

##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2014년 8월 15일 기본보험료 US\$500, 납입기간 10년납에 가입 후, 2015년 9월 15일에 US\$5,000을 추가납입한 경우, 해당시점에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US\$500×200%) × 14개월 - US\$5,000 = US\$9,000

다.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 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공시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서 일정이율을 차감 하여 산출된 이율을 사용합니다.

- 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 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 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 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
- 마.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 니다.

- (1)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다만,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에 따라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제 3조 [통화]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 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의 통화로 합니다.

# 제 4조[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 및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별표2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 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재해장해보험금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

# 제 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6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 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산정시 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 터 1년 이내로 합니다.

형

- ④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⑧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⑨ 제6항 및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란 하나의 사고 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⑩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연금은 연금개 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 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 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무

배

당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 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 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제 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 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 감한 금액)와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

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용어해설

###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 태를 말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 심신상실(心神喪失)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제 8조 [ 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적립형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는 제2조(용어의 정의)의

무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납입완료보너스 =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 ②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 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 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 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 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 지급기 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 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 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 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 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 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 ④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 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 용어해설

### [ 과실 ]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 Ø 용어해설

### [ 취소 ]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 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9조 [ 보험계약의 성립 ]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 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 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 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 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 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 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보험금 삭감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

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 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 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 제20조 [계약의 체결]

① 제1조(목적) 제2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 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br>연금형                                | 보증<br>기간부 | 정액형 (10 ~ 40년, 100세 보증) |  |  |
|--|-----------|-------------------------|--|--|
|  |           | 체증형 (10 ~ 20년 보증)       |  |  |
|  |           | 소득보장형 (10 ~ 20년 보증)     |  |  |
|  | 보증금액부     |                         |  |  |
|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                         |  |  |
| 상속연금형                                    |           |                         |  |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금 개시후에는 소득보장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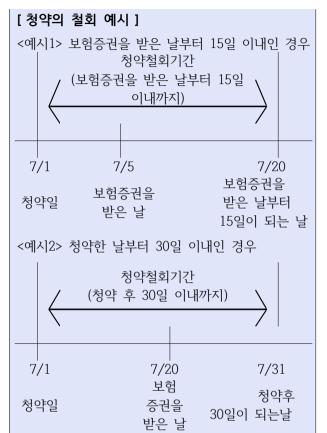
# 제21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1** 용어해설

###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한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 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 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용어해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

### 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 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제23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 용어해설

###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보험료 납입기간
-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 개시나이
- 4.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 5. 계약자
- 6.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급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

- 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직전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 습니다.
- ⑥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
- ⑦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항 제4호의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0%~50%까지 5%단위)을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
- ⑧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합니다.
- 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 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

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25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ℳ 용어해설

# [ 보험나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가입

2014년 7월 10일 1980년 1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 제26조 [계약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보험기 간 종료 등으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사고로 보지 않으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 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제2항의 지급과 관 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제2항의 금액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제2항의 지급절차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대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 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 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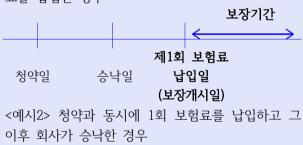
# 🐠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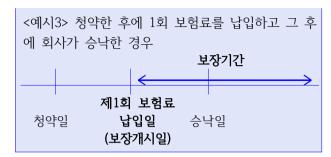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





### 제28조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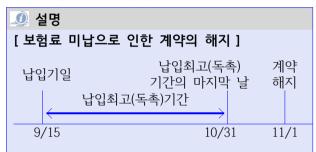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 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 시점의 해지환급 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 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

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는 제13조(주소변 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 용어해설

#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4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

-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드립니다.

# 제36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 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예시 ]

이윸(1.5%)로 적립합니다.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0.5%)로 적립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 [ 해지환급금 ]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6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8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 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③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US\$100 이상 US\$10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배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항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총 인출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초년도 연금연액 및 연금개시시점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 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서 정하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X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주) "인출 직전「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4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 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 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US\$10,000,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US\$4,000일 경우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US\$10,000의 50%는 US\$5,000이나, 납입한 보 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US\$4,000까지 인출 가능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US\$10.000의 50%인 US\$5.000 인축 가능

####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 제39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 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 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 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연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0** 용어해설

###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 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 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 제44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 용어해설

### [ 보험안내자료 ]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 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 료를 말합니다.

#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배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 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 설명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47조 [ 개인정보보호 ]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용어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제48조 [ 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민법 등 관 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 용어해설

###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1. 재해장해보험금(제5조 제1호)

|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br>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br>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
|------|--|--|--|--|--|
| 지급금액 | US\$50,000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  |  |

# 2. 연금(제5조 제2호)

#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지급사유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지급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br>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소득보<br>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br>까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br>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br>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20년) |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 02220 | 02 11   |
|---------|---|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주)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됩니다.
  - 3.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4.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년초과 경과기 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 시시점의「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 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보증지급 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무

-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 액을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8. 위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 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계약자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1. 노후설계자금

| .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br>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br>(다만, 1회에 한함)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br>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br>산한 금액 |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 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 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 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 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 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는 만 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 2. 연금

#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지급       | 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지급<br>금액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소득보<br>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까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10~20년)     |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u> </u> |  |  |
|----------|--|--|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br>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지급) |  |

## 다. 확정연금형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              |
|------|-------------------------------------|
| 지급사유 | 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      | 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
| 지급금액 |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           |
| 시합금액 |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              |
|      | 간 동안 지급                             |

#### 라. 상속연금형

| 지급사유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br>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연금개시후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3.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이하의

무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년초과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 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 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 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 액을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8.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 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 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 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 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1.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 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 을 신청한 때에는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재해분류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 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 용어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 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 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이하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 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 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 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⑰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 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 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 하여야 한다.

# 🐠 용어해설

# [ 척추(등뼈) ]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기둥모양으로 이어지는 등뼈의 집합으로, 크게 전주·중간주·후주로 구분되며 때로는 목등뼈·가슴등뼈·허리등뼈 등 관련 부위와 연결된 더 작은 부위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 [체간골]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합니다.

#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br>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 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 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 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 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 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 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 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 하며, 시야장해 평가할 때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 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 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 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 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 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한다.

# 🐠 용어해설

#### [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를 말합니다.

## [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 도의 시력상태를 말합니다.

## [ 적출 ]

신체로부터 조직을 끄집어내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切除)가 병터나 장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인데 비해 그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로서 위암의 경우 위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 따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광각무 ]

동공은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빛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광각무라고 합니다.

## [광각유]

빛에 대한 감각, 즉 빛에 대한 수용 여부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명암에 대한 감각만을 일컬으나 넓은 의미로는 색에 대한 감각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 [ 의안 ]

인공적인 눈을 말합니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 <del>률</del>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br>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 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 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 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 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 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 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 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 항목   | 내 용                 | 점수 |
|------|---------------------|----|
| 7-11 | 양측 전정기능 소실          | 14 |
| 검사   | 양측 전정기능 감소          | 10 |
| 소견   | 일측 전정기능 소실          | 4  |
|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 | 20 |
|      | 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    |
| 기능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 |    |
| 장해   | 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 12 |
| 소견   | 멈추어야 하는 경우          |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 |    |
|      | 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 8  |
|      | 벗어나는 경우             |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 검 사) 등

# 🐠 용어해설

## [ 순음 ]

음색적인 특징 없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완전히 단일 한 주파수의 소리를 말합니다.

#### [ 순음청력검사 ]

순음청력검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 중에서 말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한 옥타브마다 한 단계의 주파수의 순음을 들려주면서 청력이 어느 정도 손실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난청도, 난청곡선, 난청의 병소부위를 알 수 있습니다.

#### [ 언어청력검사 ]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최소값과 언어의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 [임피던스 청력검사]

고막을 향해 긴 소리를 주고 난 후 어느 정도가 고막에서 되돌아오고 어느 정도가 고막을 통과하여 내이로 흡수 되 는가를 그 소리의 양을 미세마이크로 잡아 전기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고막이나 중이의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를 말합 니다.

## [이음향방사검사]

내이(달팽이, 와우)에서 발생한 진동파가 외이도에 전파되어 나타난 음향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 3. 코의 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 <del>률</del> |
|-----------------------|-----------------|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 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br>장해를 남긴 때 | 40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 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 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를 할 때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 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 고, 유동식 섭취를 할 때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 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무

-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 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 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 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 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 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 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 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 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 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

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 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 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 🐠 용어해설

#### [ 교합 ]

입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상태로 아래 턱과 위턱이 맞물려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 [ 실어증 ]

입이나 발성기관 또는 귀의 외상없이 뇌의 병소나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관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운동성실어증(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소리를 말과 음절로만들지 못함). 감각성실어증(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이해능력의 장애), 건망성실어증(단어를 회상하기 어려움),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으로는 뇌졸중이 가장 많고, 뇌종양 그 외에 교통사고 등 외부적인요인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 [ 유치 ]

유치는 젖니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에 유아 및 어린이에게서 성인의 영구치 같은 기능을 하는 치아로 총 20개입니다. 유치가 있음으로 인해 주위 뼈의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영구치가 날 자리를 지켜 줌으로써 앞으로 나게 될 영구치가 제자리에 잘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합니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 <del>률</del>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 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 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할 때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 가한다. 다만,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 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 1/4 크기는 20cm), 6~11세 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 1/4 크기는 12cm),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 1/4 크기는 는 6cm)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 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 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 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 [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 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 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 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 (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

- 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 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 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 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 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 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 (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 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 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 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 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막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 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 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 (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 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 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 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 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 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 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 🐠 용어해설

#### [ 운동장해 ]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근육기능의 불규칙으로 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 추간판탈출증 ]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시켜 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추간판입니다. 추간판은 80%의 수분성분의 젤리처럼 생긴 수핵과 이 수핵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테들이 주위를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간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핵의 수분함량 감소로 탄력성이 떨어지고 나쁜 자세나 사고 등의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져 디스크가 밀려나 주위 신경근을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 [ 퇴행성 ]

생물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발달이나 진화의 단계에서 어떤 장애를 만나 현재 이전의 상태나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하는데 퇴행성 변화는 조직이나 세포의 기능 감퇴나 정지 또는 신진대사의 장애로 생기는 위축(마르거나 시들어서 우그러지고 쭈그러듦), 변성(성질이 변함), 괴사(생체 내의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따위의 병적 변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볼 수 있습니다.

## [ 기왕증 ]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 병 또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 [ 관여도 ]

기여도랑 동일한 의미이며, 한 병명에 있어 그 병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증 상을 악화시켰는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골절]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큰 외력이 일시에 가해질 때는 외상성골절, 만성적인 압력에 의할 때는 지속골절 또는 피로골절, 병적으로 조직이 침해되어 생기는 것은 병적 골절이라고 합니다.

## [탈구]

관절을 구성하는 뼈마디, 연골, 인대 등의 조직이 정 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 [ 마미신경증후군 ]

제1요추 이하 부위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되어서 골반 내 장기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의 마비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제4-5요추 사이와 요천추 부위의추간판탈출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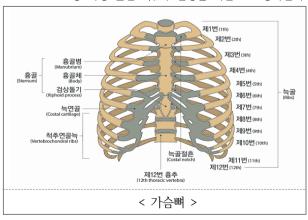
## [ 방사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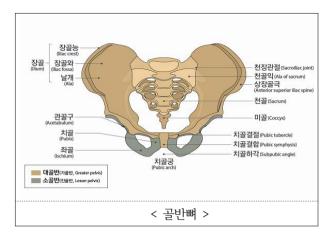
추간판탈출증, 척추종양, 척추감염 등 척추신경에 생긴 병변으로 인해 대퇴부나 허리에서 허벅다리 뒤쪽한가운데까지 좌골 신경의 영역을 따라 퍼지는 통증을 말합니다.

## 7. 체간골의 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br>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br>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 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 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 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 (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 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ℳ 용어해설

#### [ 천장관절 ]

요추 맨 마지막 뼈와 장골이라 불리는 골반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 [ 치골문합부 ]

엉덩뼈의 앞쪽에서 골반을 에워싸고 있는 뼈(치골)의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 [ 부정유합 ]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8. 팔의 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br>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br>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 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 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 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 (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 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따른다.

무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다만, 관절기능장해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 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 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 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

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 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 용어해설

#### [ 가관절 ]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 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 연유합은 제외합니다.

## 9. 다리의 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br>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br>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br>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br>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무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 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 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 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 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 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 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 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 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 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무

배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 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 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 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 (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 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 용어해설

## [ 고관절 ]

절구와 넓적다리뼈를 연결하는 관절, 골반의 볼기뼈고랑과 넓적다리뼈머리 사이에 끼어 있는 관절로 팔의 어깨관절에 해당하며 어깨관절과 같이 전형적인 구관절임(=대퇴관절, 골반관절, 엉덩이관절)을 말합니다.

## [근전도 검사]

신경과 근육의 전기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크게 신경전도검사와 침근전도검사로 구분됩니다. 그 외 시신경유발전위검사, 청신경유발전위검사,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신경전도검사는 운동신경과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근육의 반응이나 신경 자체의 반응을 분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며, 침근전도검사는 신경의 손상이 있거나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으면 근육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감지하여 이상유무를 진단합니다.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는 손이나 발의 체성감각을 자극하여 뇌의 감각피질에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여, 손이나 다리에서 뇌의 감각피질까지 어느 부위에서 이상이 있는지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 [근력검사]

도수검사를 통해 근육의 힘의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 [ 경골(脛骨) ]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 종아리뼈, 종지뼈와 함께 하퇴골을 이루며 정강뼈라고도 합니다.

#### [ 스캐노그램 ]

환부를 촬영한 X레이나 CT스캔으로 얻어진 이미지를 말합니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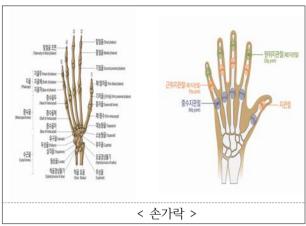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br>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br>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 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

- 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하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 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 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 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 터(제1관절 포함)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 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 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용어해설

### [ 굴신운동(屈伸運動) ]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br>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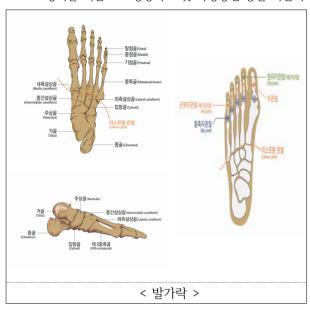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관절 포함) 심장에 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 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제1관절 포함)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용어해설

# [ 리스프랑 관절 ]

중족골과 족근골을 이어주는 작은 인대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관절로,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줍니다.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br>해를 남긴 때 | 50  |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br>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 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 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 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 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 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 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 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 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 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용어해설

### [ 장기이식 ]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 내어서 손상된 부분에 이식 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혈액투석]

투석기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걸 러주고 신체 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 [ 장루 ]

창자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연결통로입니다.

### [ 요관장문합 ]

요관과 장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요도협착 ]

요도의 벽면에 흉터가나 요도내강이 좁아진 상태로, 요도내 강이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대 개는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 [ 인공항문 ]

대장을 일부 절제한 후 끝부분을 복벽에 봉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항문암을 치료할 때 항문과 직장을 모두절제한 뒤 배꼽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 일반적이었으나, 의술이 발전하면서 항문은 그대로 둔 채 방사선 및 항암제로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 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 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 해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발생 또는 상해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정신건 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치료 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 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하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 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 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sup>주)</sup> 상 6개 항목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상태를 말한다.
  -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② 적절한 음식섭취, ④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④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⑨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마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상 6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상 6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 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 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 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 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 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 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 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 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 (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 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배

당

부

너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 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 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 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 용어해설

### [ CDR척도 ]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 SPECT(스펙트) ]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을 말합니다.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 우울증 ]

우울한 감정과 허무감, 절망감 등의 정신적 상태와 운동 능

력의 지연 및 그 외 많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말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약 2배 많으며 연령적으로 20~30대에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식욕상실이나 체중감소 또는 식욕증가와 체중증가, 흥미나 쾌락의 상실, 불면또는 수면과잉, 정신운동의 지연 또는 지체, 에너지의 감퇴나 피로감, 무가치함과 자책감, 자살충동과 자살기도, 사고력과 주위집중 능력의 감퇴 등이 보입니다. 입원력이 있거나 우울증의 발작 양상이 1회 이상이거나 알코올 남용의 병력이 있으면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 [정신분열증]

현실과의 괴리감, 망각, 환각, 환청, 양가성, 부적절한 감정, 기이하고 퇴행된 행동 등을 보이는 정신병으로 사회적 관 계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자살위 험이 높습니다.

### [ 편집증 ]

망상장애로 불리며, 괴이하지 않은 망상이 주 증상이며 다른 정신과적 질환보다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자 살시도를 하게 되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이 잘되며 약물남용도 심한 편입니다.

### [불안장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에 대하여 느끼는 불유쾌한 심리 상태로 대개 피로, 가슴이 뛰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불쾌한 긴장감, 고민, 걱정스러운 느낌 등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상상이나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 장애이며, 상태에 따라 공포감이나 불안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 [ 전환장애 ]

내부의 심리적 갈등이 특정한 신체의 증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내부의 갈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전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마비, 경련, 의식장애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 [ 공포장애 ]

특정한 대상이나 행동, 상황에 처했을 때 비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증세가 생겨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나 상황을 피해버리는 장애입니다. 비록 두려움과 회피반응이 개인적 고통을 주지만 정상적인 공포증은 일상생활이나사회적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 강박장애 ]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꾸 반복하며 생각 하게 되는 강박사고와 쓸데없는 짓임을 알면서도 되풀이하 지 않을 수 없는 강박행동의 2가지 증상으로 구성됩니다.

### [ 간질 ]

만성 신경질환으로 국소적 혹은 산발적으로 뇌세포에서 비정상적이고 조절 불가능한 전기적 충격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고 일시적이며 운동, 감각, 자율신경기능, 정신적 기능의 변화가 초래됩니다. 간질은 부분발작과 전신발작으로 구분되며 부분발작은 비정상적인 뇌파가 뇌의 전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신발작은 간질의 시기에 측정한 뇌파가 뇌 전체에서 비정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이 동 동 작   |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로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
| 임 시 물 섭 취 | <ul> <li>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 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
| 배변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br>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br>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br>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br>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br>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br>또는 간혈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br>(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15%)<br>-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br>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
|---------|---|
|         |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br>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br>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br>있는 때(5%)   |
| 목욕      | <ul> <li>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세안, 양치를 할 때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li> <li>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
| 옷 입고 벗기 | <ul> <li>상·하의 의복을 착탈할 때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상·하의 의복을 착탈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li> <li>상·하의 의복을 착탈할 때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 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

# (별표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 관련)

| 구분                 | 적립 기간   |   | 지급이자                                |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br>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재해<br>장해<br>보험금    |   | 31일 이후부터<br>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4.0%)            |
| (제5조<br>제1호)       |   | 61일 이후부터<br>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8.0%)            |
| 지급사유가<br>발생한 날의    | 보험기간 만기일<br>(다만, 이 계약이<br>더는 효력이 없<br>게 된 경우에는<br>효력이 없게 된<br>날) 이내 | 공시이율  |                                     |
| 연금<br>(제5조<br>제2호) |   | 보험기간 만기일<br>(다만, 이 계약이<br>더는 효력이 없<br>게 된 경우에는<br>효력이 없게 된<br>날) 이후 | 1년이내 : 공시이<br>율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br>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br>급금<br>(제37  | 지급자유가 발생한 열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   | 1년이내 : 공시이<br>율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조<br>제1항)          |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 율은 연금(제5조 제2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4.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제43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 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 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보너스주는 달러연금보험 (거치형)

#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거치형)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 제 1조[목적]                 | 113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     | 제 3조[통화]                 | 118 |
|     | 제 4조[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     |
|     |                          |     |
|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
|     |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118 |
|     | 제 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19 |
|     | 제 7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122 |
|     | 제 8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123 |
|     | 제 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24 |
|     | 제10조[보험금의 청구]            |     |
|     |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125 |
|     |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     |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127 |
|     |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
|     | 제15조[대표자의 지정]            |     |
|     |                          |     |
| 제3관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
|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 128 |
|     |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교   | 박]  |
|     |                          | 129 |
|     | 제18조 [ 사기에 의한 계약 ]       | 131 |

| 제4관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
|-----|----------------------|-----|
|     |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132 |
|     | 제20조[계약의 체결]         | 133 |
|     | 제21조[청약의 철회]         | 134 |
|     |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36 |
|     | 제23조[계약의 무효]         | 138 |
|     |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139 |
|     | 제25조 [ 보험나이 등 ]      | 141 |
|     | 제26조[계약의 소멸]         | 142 |
|     |                      |     |
| 제5관 | 보험료의 납입              |     |
|     |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     |
|     | 보장개시 ]               | 143 |
|     |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     |
|     |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45 |
|     |                      |     |
| 제6관 |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
|     |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146 |
|     |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
|     |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 147 |
|     |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     | 제33조 [ 해지환급금 ]       | 149 |
|     |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
|     | 제35조 [ 보험계약대출 ]      | 151 |
|     | 제36조[배당금의 지급]        |     |
|     |                      |     |
| 제7관 | 분쟁의 조정 등             |     |
|     | 제37조 [ 분쟁의 조정 ]      | 152 |

| 제38조 [ 관할법원 ]          |                |
|------------------------|----------------|
| 제39조 [ 소멸시효 ]          |                |
| 제40조[약관의 해석]           |                |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 등의             |
| 효력 ]                   | 153            |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
| 제43조 [ 개인정보보호 ]        | 154            |
| 제44조 [ 준거법 ]           | 155            |
|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                        |                |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56            |
|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 | <del>-</del> Д |
|                        | 160            |
| [별표3] 재해분류표            | 165            |
| [별표4] 장해분류표            | 165            |
|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u>.</u>       |
| 계산                     | 166            |
| [별표6] 해지환급금의 계산        | 168            |

#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거치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연금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활자금을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받거나(계약체결시점에 생활자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제5조(보험금의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 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기 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 여부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 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 는 것을 말합니다.

라.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 : 제8조(장기유지보 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장기유 지보너스를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에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 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 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

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1)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2)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 일까지
- 나.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 시이율이 확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5.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기본보험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 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배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이내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이율확정기간과 관계없이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의 공

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다.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금액)를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공시이율]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서 일정이율을 차감 하여 산출된 이율을 사용합니다.

- 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 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 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 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
- 마.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 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1)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다만,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 니다.

### 제 3조 [통화]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 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의 통화로 합니다.

### 제 4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 및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별표2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 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시기에 계약이 유효한 때: 생활자금(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경우에 한함)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

### 제 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7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산정시 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 터 1년 이내로 합니다.
- ④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⑧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⑨ 제6항 및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란 하나의 사고 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⑩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생활자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

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 표5 참조)에 따릅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연금은 연금개 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 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 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 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 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 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제 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 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 감한 금액)와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 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

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금액)와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용어해설

###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 태를 말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 심신상실(心神喪失)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제 8조 [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거치형 계약에 대하여 이율확정기간 종료시

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 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다만, 장기유지보너 스는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 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구분        | 장기유지보너스     |
|-----------|-------------|
| 5년 이율확정형  | 기본보험료의 1.0% |
| 10년 이율확정형 | 기본보험료의 2.0% |

② 피보험자가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 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 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무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배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당 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참조) 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12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 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 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 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없습니다.

-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 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 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0** 용어해설

#### [ 과실 ]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 중대한 과실 ]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용어해설

#### [ 취소 ]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 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 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 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

# 용어해설

장합니다.

#### [ 보험가입금액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보험료 할증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제1회 보험료 ]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 제20조 [계약의 체결]

① 제1조(목적) 제2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 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후에 연금지급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복수로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보증 기간부 | 정액형(10 ~ 40년, 100세보증) |
|-------------------------------------|--------|-----------------------|
| 종신                                  |        | 체증형(10 ~ 20년보증)       |
| 연금형                                 |        | 소득보장형(10 ~ 20년보증)     |
|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        |                       |
| 60년)                                |        |                       |
| 상속연금형                               |        |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금 개시후에는 소득보장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21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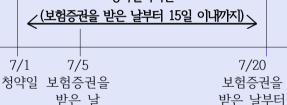
# **ወ** 용어해설

###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받은 날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7/20
 7/31

 청약일
 보험증권을
 청약후 30일이

 받은 날
 되는날

####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

15일이 되는날

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 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한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 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 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 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 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생활자금 지급을 선택한 경 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 🕖 용어해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 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 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제23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생활자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 용어해설

####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 개시나이
- 3.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 4. 계약자
-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 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항에서 정하는 "이미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 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참조)
- ⑥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 항 제3호의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0%~50%까지 5% 단위)을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 표"참조)

- ⑦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⑧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25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 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 예2) 2014년 12월 10일 에 가입 에 가입

2014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2014년 12월 10일

만 34년 5개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 제26조 [계약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보험기 간 종료 등으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사고로 보지 않으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 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제2항의 지급과 관 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제2항의 금액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제2항의 지급절차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 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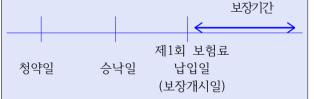
# 🧶 용어해설

#### [보장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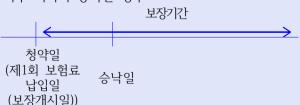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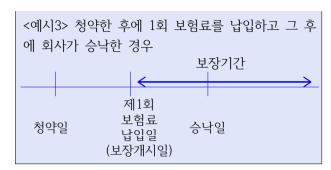
#### [ 보장개시일 예시 ]

<예시1> 청약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 제28조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0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드립니다.

#### 제32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동안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아래와 같이 이율확정기간별로 정한 별 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합니 다)로 합니다.

| 보험형태      | 이율확정기간 |
|-----------|--------|
| 5년 이율확정형  | 5년     |
| 10년 이율확정형 | 10년    |

- ③ 제2항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계 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

시이율과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 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⑥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 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0.5%)로 적립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 [ 해지환급금 ]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지환급금의 계산"(별표6) 참조)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2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이 계약이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되는 때에는, 기본 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 (MVA:Market Value Adjustment))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시장가격조정률(MVA)에 대한 계산은 "해지환급금의 계산"(별표6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시장가격 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해지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 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 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계약자적 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 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③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US\$100 이상 US\$10 단위로 합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총 인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초 년도 연금연액 및 연금개시시점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 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 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만 인출 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 직전「이미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납입한 보험료」
   X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주) "인출 직전「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5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 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 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1** 용어해설

####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US\$10,000,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 자적립금이 US\$3,000인 경우

→ 해지환급금은 US\$10,000이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한도에 따라 US\$3,000까지 인축 가능

####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 제35조 [ 보험계약대출 ]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연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 [ 배당금의 지급 ]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7관 분쟁조정 등

#### 제3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 용어해설

#### [ 소멸시효 ]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 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 는 제도입니다.

#### [ 소멸시효 예시 ]

-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0** 용어해설

#### [ 보험안내자료 ]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 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

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 설명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43조 [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용어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 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 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 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된 법률을 말합니다.

#### 제44조 [ 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민법 등 관 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5조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 용어해설

####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1. 재해장해보험금(제5조 제1호)

| 지급<br>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br>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br>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지급<br>금액 | US\$50,000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2. 생활자금(제5조 제2호)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br>생활자금 지급시기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다만, 계<br>약체결 시점에 신청한 계약에 한함) |                                     |   |  |
|----------|--|-------------------------------------|---|--|
| 지급<br>사유 | 지급<br>주기   | 7                                   |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   |  |
|          | 매월   | 5년<br>이율확<br>정형                     | 계약일 이후 만 1개월<br>경과시점의<br>보험계약해당일부터 매월<br>보험계약해당일 (60회지급)  |  |
|          |  | 10년<br>이율확<br>정형                    | 계약일 이후 만 1개월<br>경과시점의 보험<br>계약해당일부터 매월<br>보험계약해당일 (120회지급)  |  |
|          | 매년   | 5년<br>이율확<br>정형<br>10년<br>이율확<br>정형 |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의<br>보험계약해당일부터 매년<br>보험계약해당일 (5회지급)<br>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의<br>보험계약해당일부터 매년<br>보험계약해당일 (10회지급) |  |
| 지급<br>금액 |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br>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지                          |                                     |   |  |

급주기(매월, 매년)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주)「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란 기본보험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 생활자금을 차감하여「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에는「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3. 연금(제5조 제3호)

####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지급사유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br>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br>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br>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지급<br>금액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금액을 지급(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소득<br>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까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보증지급기간: 10 ~ 20년)   |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br>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br>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br>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br>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br>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br>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주)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 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 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 (이율확정기간에는「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로 납 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3.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4.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공시이율」및「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 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

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 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 액을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8. 위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 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 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지 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계약자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1. 노후설계자금

| .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br>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br>(다만, 1회에 한함)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br>계산한 금액  |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 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 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이 율확정기간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 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 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 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 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 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 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 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 2. 연금

#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지급사유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br>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지 급  대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소득<br>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까 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10~20년)     |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br>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

| 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 |
|--------------------------|
| 금으로 지급)                  |

#### 다. 확정연금형

| 지급사유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br>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br>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 동안 지급       |

#### 라. 상속연금형

| 지급사유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연금개시 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 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 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이율 확정기간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 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3.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

- 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 증이율)이 적용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공시이율」및「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는 연복리 1.5%, 10년초과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 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 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 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 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 액을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8.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 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 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지 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 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11.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 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

- 을 신청한 때에는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별표3)

## 재해분류표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적립형)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4)

# 장해분류표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적립형) 약관의 별표4(장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11항, 제11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관련)

| 구분  | 적립기간                             |  | 지급이자                                   |
|---|----------------------------------|--|--|
| 재해장해<br>보험금<br>(제5조<br>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br>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br>6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4.0%)               |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br>9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8.0%)               |
| 생활자금<br>(제5조<br>제2호)<br>및<br>연금<br>(제5조<br>제3호) | 지급사<br>유가 발<br>생한 날              | 보험기간 만기일(다<br>만, 이 계약이 더는<br>효력이 없게 된 경<br>우에는 효력이 없게<br>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   | 청구일<br>까지의<br>기간 -               | 보험기간 만기일(다<br>만, 이 계약이 더는<br>효력이 없게 된 경<br>우에는 효력이 없게<br>된 날) 이후 | 1년<br>이내 : 공시이율의<br>50%<br>1년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br>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br>환급금<br>(제33조<br>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br>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 년 이내:<br>공시이율의 50%<br>1년<br>초과기간: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br>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생활자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

-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 육은 연금(제5조 제3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4.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제39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 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 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 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의 계산

(제33조 관련)

#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 률(MVA) 적용

-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합니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 + 0.4\%} \right\}^{\frac{\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하며, 해지시점의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은 해지시점에 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4)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시 "해지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취지

이 계약에서 이율확정기간 동안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한 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

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계약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해지환급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지환급금에 반영하기 위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예시

(1)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 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보다 2.0% 높은 경우

| 구 분                      |     | 5년<br>이율확정형 | 10년<br>이율확정형 |
|--------------------------|-----|-------------|--------------|
| ① 보험가입시점<br>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 2.50%       | 2.50%        |
| ② 해지시점<br>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 4.50%       | 4.50%        |
|                          | 1년  | 8.84%       | 18.80%       |
| ③<br>시장가격<br>조정률         | 2년  | 6.71%       | 16.90%       |
|                          | 3년  | 4.52%       | 14.96%       |
|                          | 4년  | 2.29%       | 12.97%       |
|                          | 5년  | 0.00%       | 10.93%       |
|                          | 6년  | -           | 8.84%        |
|                          | 7년  | -           | 6.71%        |
|                          | 8년  | -           | 4.52%        |
|                          | 9년  | -           | 2.29%        |
|                          | 10년 | _           | 0.00%        |

(2)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 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보다 2.0% 낮은 경우

| 구 분                      |                | 5년<br>이율확정형 | 10년<br>이율확정형 |
|--------------------------|----------------|-------------|--------------|
| ① 보험가입시점<br>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 2.50%       | 2.50%        |
| ② 해<br>이율확정기긴            | 지시점<br>1별 공시이율 | 0.50%       | 0.50%        |
| ③<br>시장가격<br>조정률         | 1년             | -6.50%      | -15.21%      |
|                          | 2년             | -4.83%      | -13.41%      |
|                          | 3년             | -3.20%      | -11.64%      |
|                          | 4년             | -1.59%      | -9.90%       |
|                          | 5년             | 0.00%       | -8.18%       |
|                          | 6년             | -           | -6.50%       |
|                          | 7년             | -           | -4.83%       |
|                          | 8년             | -           | -3.20%       |
|                          | 9년             | -           | -1.59%       |
|                          | 10년            | -           | 0.00%        |

(주)1. 위의 "① 보험가입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률의 계산 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이율확 정기간별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보험가입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2. ③ 시장가격조정률(MVA) =

 $1 - \left\{ \frac{1 +$ 보험가입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2.5%)}  $\left\{ \frac{1 +$  해지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0.4%

#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mark>특</mark>약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 제 1조[목적]             | 173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     |                      |      |
| 제2관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
|     | 제 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73  |
|     | 제 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      |
|     |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 174  |
|     | 제 5조[보험금의 청구]        |      |
|     | 제 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175  |
|     |                      |      |
| 제3관 | <b>특약의 성립과 유지</b>    |      |
|     | 제 7조[특약의 적용]         | 175  |
|     | 제 8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176  |
|     |                      |      |
| 제4관 | 보험료의 납입              |      |
|     | 제 9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 176  |
|     |                      | ., 0 |
|     |                      |      |
| 제5관 | 기타사항                 |      |
|     | 제10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176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금의 대리청구 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제 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 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 할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 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7조(특약의 적용)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 4조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또 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 5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5.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 부(가족관계증명서)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 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7조(특약의 적용)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7조(특약의 적용)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 7조 [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제 8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 되어집니다.
- ② 제7조(특약의 적용)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 용어해설

####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 9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제5관 기타사항

#### 제10조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 특약(즉시형)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제 1조 [ 목적 ] 180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     | 제 3조 [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 |
|     | 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
|     | 확정 ] 181                       |
|     |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183                         |
|     | 제 5조 [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84  |
|     | 제 6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
|     | 확정 ] 187                       |
|     | 제 7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                            |
|     | 제 8조["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188                         |
|     | 제 9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                            |
|     | 제10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189         |
|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 제12조 [ 보험금의 청구 ] 190           |
|     | 제13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 191         |
|     | 제14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193   |
|     | 제15조 [ 보헌수인자의 지정 ] 194         |

| 제3관 | 특약의 성립과 유지                   |     |
|-----|------------------------------|-----|
|     | 제16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194 |
|     | 제17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     |
|     | 득실]                          |     |
|     | 제18조 [ 특약의 소멸 ]              | 195 |
| 제4관 | 보험료의 납입                      |     |
|     | 제1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 195 |
| 제5관 | 특약의 해지 및 해지 <del>환급금</del> 등 |     |
|     |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196 |
|     |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     | 제22조[배당금의 지급]                | 197 |
| 제6관 | 기타사항                         |     |
|     | 제23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     |
|     | 준용]                          | 198 |
|     |                              |     |
|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99 |
|     |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     |
|     | 분류표                          | 201 |
|     | [별표3] 뇌출혈 분류표                | 203 |
|     |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204 |
|     | [별표5] 폐질환 분류표                |     |
|     |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
|     | 계산                           | 206 |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 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전환전 계약: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

-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1) 생존연금: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2) 6대질병연금: 연금개시일부터 100세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2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 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⑥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

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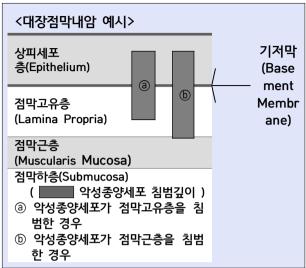
#### 🐠 용어해설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제 4조 [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 5조 [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특약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뇌출혈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경학

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 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 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 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 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 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 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제 6조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면허를 가진 자가 급성심 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이 진단은 병력과함께 심전도,심장초음파,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기초로할 수 없는 경우에한하여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될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 7조 [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 (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 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 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

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제 8조 [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 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영구적인 황달, 복수, 간성뇌병증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1. 영구적 황달(jaundice)
- 2. 복수(ascites)
-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합니다.

#### 제 9조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표 중 "폐질환 분류표"(별표5 참조)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 의 악화된 상태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 야 합니다.

- 1.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 2.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 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 FEV1.0(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 ②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

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 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의검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합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생존연금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폐질환"(이하 "6대질병"이라 합니다) 진단확정 될 때(다만, 최초 1회한): 6대질병연금(생존연금의 100%를 지급하며,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전에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정한 "암"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6대질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암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 진단확정 받더라도「암 보장개시일」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전액 부담합니다.

# ● 용어해설 [ 암 보장개시일 ]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 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암 보장개시일 예시 ] → 보험계약일 2015년 4월 10일 90일 (암 보장제외기간) 2015.4.10. 보험계약일 암보장개시일

####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진단서, 뇌출혈진단 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서, 말기신부전증진단 서, 말기간질환진단서, 말기폐질환진단서 등)
- 3.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 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6.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 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 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의 생존 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 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6대 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제1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 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 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 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 40년, |
|--------|------------------------|
| 8710   | 100세 보증                |
| 6대질병연금 | 10년 확정                 |

④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6대질병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

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소 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18조 [ 특약의 소멸 ]

- 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지급사유가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9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 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 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전환전계약이 이 특약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제21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 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 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 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운용자산이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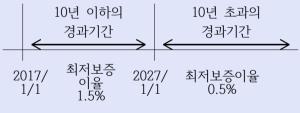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 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 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2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이윸(1.5%)로 적립합니다.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0.5%)로 적립합니다.



#### [ 공시이율의 공시 ]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23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전환 시점에 전환전 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보험계약대출』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생존연금(제10조 제1호)

| 지급사유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지    | 종신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
| 급    | 연금형 |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
| 금    | 보증기 | 산한 금액을 지급                               |
| 액    | 간부  |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100세)                |

#### ■ 6대질병연금(제10조 제2호)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최대 100세 까지) 중 피보<br>험자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br>최초 1회한) |
|------|---|
| 지급금액 | 생존연금의 100% 지급(10년 확정지급)   |

- (주)1. 생존연금액 및 6대질병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생존연금액 및 6대질병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2.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 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 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4.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10 ~ 4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10 ~ 40 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 당일에 지급합니다.
  - 5. 위의 제4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6.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 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8. 생존연금 및 6대질병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9. 6대질병연금의 경우 6대질병 중 최초 1회한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별표2)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5. 피부의 악성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8. 음경의 악성신생물(암) 9.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1.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13.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2. 골수섬유증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1-C58 C60 C62 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악성신생물(암)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악성신생물(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분류번호 C61),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 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4조("대장점 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 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별표3)

#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1. 지주막하출혈         | 160  |
| 2. 뇌내출혈           | 1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162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 2. 후속 심근경색증             | I22  |
|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폐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 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 J09-J18 |
|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J20-J22 |
|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J40-J47 |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160-170 |
|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         |
|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0-J86 |
| 6. 흉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0-J99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6)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관련)

| 구분  | 적립기간   |  | 지급이자                                |
|---|--|--|-------------------------------------|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br>3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제1회<br>6대질병연                              | 지급기일의<br>이후부터 60일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4.0%)            |
| 금<br>(제10조<br>제2호)                        | 지급기일의 61일<br>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br>기?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8.0%)            |
| 생존연금<br>및 제2회<br>이후                       | 지 급 사 유 가<br>발생한 날의<br>다 음 날 부 터<br>청구일까지의<br>기간 | 보 혐 기 간<br>만기일(다<br>만, 생존연<br>금의 특약이<br>더는 효력<br>이 없게 된<br>경우에 는<br>효력이 없<br>게 된<br>이내         | 공시이율                                |
| 이우<br>6대질병<br>연금<br>(제10조<br>제1조,<br>제2호) |  | 보험기간<br>만기일(다<br>만, 생존연<br>금의 경우<br>이 특약이<br>더는 효력<br>이 없게 된<br>경우에 는<br>효력이 없<br>게 된 날)<br>이후 | 1년이내 : 공시이<br>율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다음<br>일까지의 기긴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1.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6대질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 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6대질병연금 <u>전환</u>특약(거치형)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거치형)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제 1조[목적]212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                                |
|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     | 제 3조 [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 |
|     | 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
|     | 단확정 ] 215                      |
|     |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217                         |
|     | 제 5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 218                            |
|     | 제 6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
|     | 확정 ] 220                       |
|     | 제 7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221                         |
|     | 제 8조 [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                            |
|     | 제 9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         |
|     | 정 ]222                         |
|     | 제10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223          |
|     |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 제12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24   |
|     | 제13조 [ 보험금의 청구 ]226            |
|     | 제1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     | 제15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228   |
|     | 제16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229         |

| 제3관 | <b>특약의 성립과 유지</b>            |
|-----|------------------------------|
|     | 제17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230      |
|     | 제18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
|     | 제19조[특약의 무효]                 |
|     | 제20조 [ 특약내용의 변경 등 ] 232      |
|     | 제21조 [ 특약의 소멸 ]234           |
| 제4관 | 보험료의 납입                      |
|     | 제22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234         |
| 제5관 | <b>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b>      |
|     |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
|     | 서면동의 철회권  234                |
|     | 제24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235 |
|     | 제25조 [ 해지환급금 ]237            |
|     | 제26조 [ 보험계약대출 ]              |
|     | 제27조[배당금의 지급]                |
| 제6관 | 기타사항                         |
|     | 제 28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 238                          |
|     |                              |
|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39          |
|     |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
|     | 분류표 241                      |
|     | [별표3] 뇌출혈 분류표 241            |
|     |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42        |
|     | [별표5] 폐질환 분류표 242            |
|     |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     | 계산 243                       |

#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거치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3 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및 6대질병연금을 지급받 기 위한 계약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전환전 계약: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1) 생존연금: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2) 6대질병연금: 연금개시일부터 100세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 용어해설

####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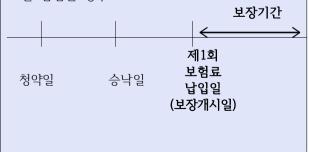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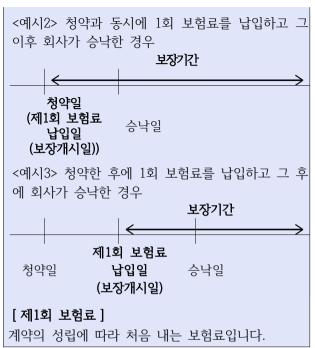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2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암)),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 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⑥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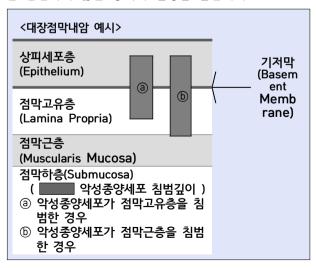
#### 🐠 용어해설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제 4조 [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 5조 [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뇌출혈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 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 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 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

- 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 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 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 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 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제 6조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 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급성심 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 7조 [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 (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 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 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제 8조 [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영구적인 황달, 복수, 갓성뇌병증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1. 영구적 황달(jaundice)
- 2. 복수(ascites)
-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 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 9조 [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표 중 "폐질환 분류표"(별표5 참조)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 의 악화된 상태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 야 합니다.
  - 1.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 2.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 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 FEV1.0(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 ②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 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 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③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의검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합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생존연금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폐질환"(이하 "6대질병"이라 합니다) 진단확정 될 때(다만, 최초 1회한): 6대질병연금(생존연금의 100%를 지급하며,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1조(특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보장개시일」전에 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따른 6대질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6대질 병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6대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지급사유) 제3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 및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12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무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 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용어해설

####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 태를 말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 심신상실(心神喪失)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제13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진단서, 뇌출혈진단 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서, 말기신부전증진단 서, 말기간질환진단서, 말기폐질환진단서 등)
  - 3.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4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무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6.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1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 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 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6대 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 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 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 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 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 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 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 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 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 외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17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 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 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 40년,<br>100세 보증 |
|--------|-----------------------------------|
| 6대질병연금 | 10년 확정                            |

④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6대질병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 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소 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19조 [ 특약의 무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무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 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 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 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 과실 ]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자를 말합니다.

# 제20조 [ 특약내용의 변경 등 ]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전환일시금
  - 2. 생존연금의 보증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 3. 계약자
  - 4. 기타 특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감액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 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생존연금의 보증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존연금의 보증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 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 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21조 [특약의 소멸]

-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및 연금지급 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22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 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

무

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4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 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 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 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 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1.5%)로 적립합니다.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0.5%)로 적립합니다.



#### [ 공시이율의 공시 ]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

#### 제25조 [ 해지환급금 ]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4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26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28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 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전환 시점에 전환전 계약 약관에 서 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제10조 제1호)

(별표1)

|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br>하였을 때   |  |  |
|------|----------------------------------|--|--|
| 지급금액 |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br>계약자적립금 |  |  |

#### ■ 생존연금(제10조 제2호)

| 지급사유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지급<br>금액 | 금형<br>보증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br>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 6대질병연금(제10조 제3호)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최대 100세 까지) 중<br>피보험자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br>때(다만, 최초 1회한) |  |
|------|--|--|
| 지급금액 | 생존연금의 100% 지급(10년 확정지급)  |  |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전환일시금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생존연금액 및 6대질병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생존연금액 및 6대질병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 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 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5.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10 ~ 4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10 ~ 40 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 당일에 지급합니다.
- 6. 위의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 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생존연금 및 6대질병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0. 6대질병연금의 경우 6대질병 중 최초 1회한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11.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별표2)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약관의 별표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와 동일

(별표3)

#### 뇌출혈 분류표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약관의 별표3(뇌출혈 분류표)와 동일 (별표4)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약관의 별표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와 동일

(별표5)

#### 폐질환 분류표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약관의 별표5(폐질환 분류표)와 동일

#### (별표6)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 구분  | 적립기간                                |   | 지급이자                                |
|---|-------------------------------------|---|-------------------------------------|
| 사망보험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br>3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금 및<br>제1회<br>6대질병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br>6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4.0%)            |
| 연금<br>(제10조<br>제1호,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br>9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6.0%)            |
| 3호)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br>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8.0%)            |
| 생존연금<br>및 제2회                             | 지급사유가<br>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            | 보험기간 만기<br>일(다만, 생존<br>연금의 경우<br>이 특약이 더<br>는 효력이 없<br>게 된 경우에<br>는 효력이 없<br>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 이후<br>6대질병<br>연금<br>(제10조<br>제2호,<br>제3호) | 청구일까지<br>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br>일(다만, 생존<br>연금의 경우<br>이 특약이 더<br>는 효력이 없<br>게 된 경우에<br>는 효력이 없<br>게 된 병우에<br>는 효력이 없 | 1년이내 : 공시이율<br>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 음날부터 지급<br>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br>환급금<br>(제25조<br>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br>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br>기간 |   | 1년이내 : 공시이율<br>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br>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1.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6대질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 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 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즉시형)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 제 1조[목적]                | 248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         |                         |     |
| 제2과     | 보험금의 지급                 |     |
| 게Z건     |                         |     |
|         | 제 3조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 251 |
|         |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         |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52 |
|         | 제 6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 내용  |
|         | 의 변경]                   | 255 |
|         | 제 7조[보험금의 청구]           | 256 |
|         |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
|         |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58 |
|         | 제10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 259 |
|         |                         |     |
| 제3관     | <b>특약의 성립과 유지</b>       |     |
|         | 제1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259 |
|         | 제12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 |     |
|         |                         |     |
|         | 제13조 [ 특약의 소멸 ]         |     |
|         |                         |     |
| 2U 4 2U |                         |     |
| 세4관     | 보험료의 납입                 |     |
|         | 제14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 261 |
|         |                         |     |

| 제5관      |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 <del>급</del> 금 등 |
|----------|-------------------------------|
|          |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61          |
|          |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 제17조[배당금의 지급] 263             |
|          |                               |
| 7JI & 7L | 기정대기청구에 교육 교육                 |
| 세0건      |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          | 제18조 [ 적용대상 ] 263             |
|          | 제19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          | 제20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264       |
|          | 제21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
|          | 지급절차 ]                        |
|          |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
|          | 청구 ] 265                      |
|          |                               |
| TU 7 71  |                               |
| 세/판      | 기타사항                          |
|          | 제23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 265                           |
|          |                               |
|          |                               |
|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66           |
|          | [별표2] 재해분류표 268               |
|          |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          | 계산 269                        |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 LTC란 'Long Term Care'의 영문 첫 글자를 기준으로 표현한 용어로써, LTC(Long Term Care)의 세부내용은 약관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 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 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전환전 계약: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

해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합니다. "보장 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3조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이 특약에 있어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 제 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생존연금
- 2.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장 기요양연금(최고 10년 또는 20년 한도)

#### 🐠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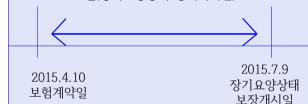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 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계약일(부활(효

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 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 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예시 ]

→ 보험계약일 2015년 4월 10일



90일(장기요양상태 장제외기간)

####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장기요양상태"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장기요양연금 지급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남은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을 10년으로 선택한 피보험자가 1년 동안 장기요양연금을 지급 받은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이외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연금의지급은 중지됩니다. 중지된 이후에 다시"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남은 9년간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새로이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

양연금의 지급을 다시 중지합니다.



#### 🐠 용어해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 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 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마. 종합병원

#### 제 6조 [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

- ①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 따른 "장기요양상 태"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라 합 니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이하 "법 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 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계약의 "장기요양상태"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장기요양연금액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5등급에 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 되는 경우 등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 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 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 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장기요양연금액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제 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병명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 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9**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 습니다.

#### 🗕 용어해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

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11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 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 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 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④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10년, 20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은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 40년, |  |
|--------|------------------------|--|
| 0      | 100세 보증                |  |
| 장기요양연금 | 최고 10년, 20년 한도         |  |

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13조 [특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4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전환전계약이 이 특약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제16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 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 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

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 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2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1.5%)로 적립합니다.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외부지표금리 ]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 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적용대상 ]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19조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또는 특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

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20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 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 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8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계약자는 특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21조 [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절 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제18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 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 부(가족관계증명서)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관 기타사항

#### 제23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전환 시점에 전환전 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보험계약대출』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생존연금(제4조 제1호)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br>아 있을 때   |
|--------------------------------|--|
| 지 종신연<br>급 금형<br>금 보증기<br>액 간부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br>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 10 ~ 40년, 100세) |

#### ■ 장기요양연금(제4조 제2호)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br>개시일」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br>고,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
| 지급금액 | 생존연금의 100% 지급(10년/ 20년 한도 지급)  |  |  |

- 1. 생존연금액 및 장기요양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 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 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 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 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4. 생존연금의 경우 10 ~ 4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10 ~ 40년 또는 100세

-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 니다.
- 5. 위의 제4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6.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 습니다.
- 7.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8.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10 년, 20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도기간은 생 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9. 장기요양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과 달리 제1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한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한도기간에 한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 10.장기요양연금 지급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판정받 은 장기요양등급이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 기요양연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11.제10호에 따라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남은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별표2)

#### 재해분류표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적립형)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3)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관련)

| 구분                                       | 적립:                      | 기간   | 지급이자                                |
|--|--------------------------|--|-------------------------------------|
| 제1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br>30일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장기요양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연금                                       | 60일 이내 기간                |  | + 가산이율(4.0%)                        |
| (제4조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6.0%)            |
| 제2호)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8.0%)            |
| 생존연금<br>및 제2회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이 특약이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성당)이내     | 공시이율                                |
| 이후<br>장기요양<br>연금<br>(제4조<br>제1호,<br>제2호) | 다음날부터<br>청구일까지의<br>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이 특약이더는 효력이었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었게 된 병기 없게된 날)이후 | 1년이내 : 공시이율<br>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더<br>지급일까지          |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장기요양연금은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LTC연금전환 특약(거치형)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거치형)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 제 1조[목적]               | 274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     |                        |     |
|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
|     | 제 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277 |
|     |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78 |
|     |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79 |
|     | 제 6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     |
|     | 내용의 변경]                | 282 |
|     | 제 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84 |
|     | 제 8조[보험금의 청구]          | 285 |
|     |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
|     |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287 |
|     | 제11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 288 |
| 제3관 | <b>특약의 성립과 유지</b>      |     |
|     |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289 |
|     |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     |
|     | 득실]                    |     |
|     | 제14조[특약의 무효]           | 290 |
|     | 제15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 291 |
|     | 제16조 [ 특약의 소멸 ]        | 293 |
| 게/과 | 보험료의 납입                |     |
| 게4건 |                        |     |
|     | 제1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 293 |
|     |                        |     |

| 제5관 | 특약의     | 해지 및 해지         | 환급금 등             |     |
|-----|---------|-----------------|-------------------|-----|
|     | 제18조 [  | 계약자의 임의하        | 배지 및 피보험          | 심자의 |
|     |         | 서면동의 철회권        | 별 ]               | 293 |
|     | 제19조 [  | 공시이율의 적용        | 용 및 공시] …         | 294 |
|     | -       | 해지환급금] …        |                   |     |
|     | 제21조 [  | 보험계약대출 ]        |                   | 296 |
|     | 제22조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제6관 | 지정대     | <b>  청구에 관한</b> | 사항                |     |
|     | 제23조 [  | 적용대상 ]          |                   | 296 |
|     | 제24조 [  | 지정대리청구인         | 의 지정]             | 297 |
|     | 제25조 [  | 지정대리청구인         | 의 변경지정]           |     |
|     | 제26조 [  | 지정대리청구인         | 에 따른 보험금          | 금의  |
|     |         | 지급절차]           |                   | 298 |
|     | 제27조 [  | 지정대리청구인         | 에 따른 보험금          | 급의  |
|     |         | 청구]             |                   |     |
|     |         |                 |                   |     |
| 제7관 | 기타사형    | 다<br>5          |                   |     |
|     | 제28조 [  | 전환전 계약 약        | 관 규정의 준용          | 를 ] |
|     |         |                 |                   | 298 |
|     |         |                 |                   |     |
|     | [별표1] . | 보험금 지급기준        | · <b>丑</b> ······ | 299 |
|     |         |                 |                   |     |
|     |         | 보험금을 지급할        |                   |     |
|     |         | 계산              |                   |     |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거치형)

※ LTC란 'Long Term Care'의 영문 첫 글자를 기준으로 표현한 용어로써, LTC(Long Term Care)의 세부내용은 약관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 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전환전 계약: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 해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 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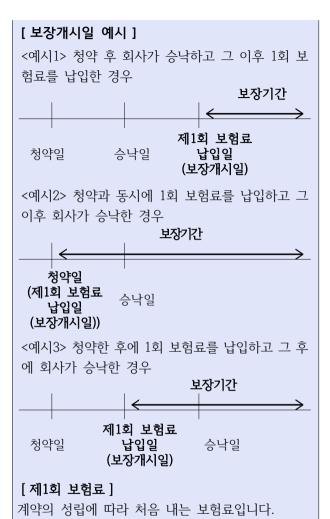
# 🕡 용어해설

####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3조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이 특약에 있어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

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 제 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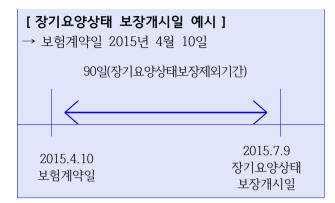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생존연금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장 기요양연금(최고 10년 또는 20년 한도)

#### **0** 용어해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 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계약일(부활(효 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 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 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제 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16조(특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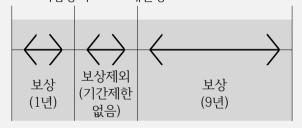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

- 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장기요양상태"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 및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장기요양연금 지급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남은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을 10년으로 선택한 피 보험자가 1년 동안 장기요양연금을 지급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 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 급'이외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중지된 이후에 다시"장기

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남은 9년간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새로이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장기 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 양연금의 지급을 다시 중지합니다.

장기요양연금 "장기요양상태"로 지급중지 재판정



#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 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 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마. 종합병원

#### 제 6조 [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

- ①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 따른 "장기요양상 태"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라 합 니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이하 "법 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 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계약의 "장기요양상태"에 상응하는 새로운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장기요양연금액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5등급에 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 되는 경우 등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 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 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 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장기요양연금액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장기요양연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 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 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제 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 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용어해설

####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 태를 말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 심신상실(心神喪失)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제 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병명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 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

무

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의 보증 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제11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12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 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④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10년, 20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은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br>40년, 100세 보증 |
|--------|-----------------------------------|
| 장기요양연금 | 최고 10년, 20년 한도                    |

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1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금의 지급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 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 과실 ]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자를 말합니다.

#### 제15조 [ 특약내용의 변경 등 ]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전환일시금
  - 2. 생존연금의 보증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 3. 계약자
  - 4. 기타 특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감액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 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생존연금의 보증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연금 한도기 간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생존연금의 보증기간은 미리 설정된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 미만 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제3조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 따라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생존연금의 보증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 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 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 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 지화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16조 [특약의 소명]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 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1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 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4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9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 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 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 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2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1.5%)로 적립합니다.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3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0.5%)로 적립합니다.



####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 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 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공시이율의 공시 ]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9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21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제23조 [ 적용대상 ]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2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또는 특약체결 이후에 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 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2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 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 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 후에 제2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 상실 된 것으로 봅니다.

#### 제2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특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26조 [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절 차 ]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7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제2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 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7조 [ 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 부(가족관계증명서)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관 기타사항

#### 제28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 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전환 시점에 전환전 계약 약관에 서 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사망보험금(제4조 제1호)

|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br>을 때    |
|------|-----------------------------------|
| 지급금액 |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br>자적립금 |

#### ■ 생존연금(제4조 제2호)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br>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 지 종신<br>급 연금 <sup>6</sup><br>금 보증 <sup>2</sup><br>액 간부 | 형 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br>기 금액을 지급   |

#### ■ 장기요양연금(제4조 제3호)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br>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고,<br>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br>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생존연금의 100% 지급(10년/ 20년 한도 지급)   |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전환일시금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생존연금액 및 장기요양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생존연금액 및 장기요양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 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 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 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 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5.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10 ~ 4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10 ~ 40 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 당일에 지급합니다.
- 6. 위의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 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9.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10 년, 20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도기간은 생 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10. 장기요양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과 달리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한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한도기간에 한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장기요양연금 지급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판 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 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12. 제11호에 따라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남은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 13.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별표2)

# 재해분류표

무배당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적립형)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일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관련)

| ( 110 + 1120 + 1120 + 1120 + 1120  |  |   |                                     |  |
|------------------------------------|--|---|-------------------------------------|--|
| 구분                                 | 적립   | 기간  | 지급이자                                |  |
| 사망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br>3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및<br>제1회<br>장기요양                   |  | 일의 31일<br>1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4.0%)            |  |
| 연금<br>(제4조<br>제1호,                 | 지급기일의 61일<br>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6.0%)            |  |
| 제3호)                               |  | 91일 이후<br>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8.0%)            |  |
| 생존연금<br>및<br>제2회 이후                | 지급사유가<br>발생한 날<br>의 다음날<br>부터 청구<br>일까지의<br>기간 | 보험기간 만<br>기일(다만,<br>이 특약이<br>더는 효력이<br>없게 된 경<br>우에는 효력<br>이 없게 된<br>날)이내 | 공시이율                                |  |
| 장기요양<br>연금<br>(제4조<br>제2호,<br>제3호)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이 특약이더는 효력이었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었게 된 경이었게 된 성기 된 일이 있게 된날) 이후         | 1년이내 : 공시이율<br>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해지<br>환급금<br>(제20조                 | 다음날부터  | 발생한 날의<br>청구일까지의<br> 간  | 1년이내 : 공시이율<br>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제20조<br>제1항)                      | 청구일의<br>지급일까                                   | 다음날부터<br>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주)1.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장기요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 특약(즉시<u>형)</u>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
|          | 제 1조[목적]                | 308 |
|          | 제 2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
|          |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311 |
|          | 제 4조[보험금의 청구]           |     |
|          | 제 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313 |
|          | 제 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
|          |                         |     |
| 7U 2 7I  |                         |     |
| 세3관      | 특약의 성립과 유지              |     |
|          | 제 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315 |
|          | 제 8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 | 실 ] |
|          |                         | 316 |
|          | 제 9조[특약의 소멸]            | 317 |
|          |                         |     |
| 711 4 71 | 나라크이 나이                 |     |
| 세4판      | 보험료의 납입                 |     |
|          | 제10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 318 |
|          |                         |     |
| 제5과      | <b>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b> |     |
| 세기단      |                         |     |
|          |                         | 318 |
|          |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
|          | 제13조 [ 해지환급금 ]          | 320 |
|          |                         |     |

321

| 제6관 | <b>기타사항</b><br>제15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
|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br>계산 | <del>!</del> |

제14조[배당금의 지급] …………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 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 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주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 람을 말합니다.
    - 마.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피보험자가 아니라 주 피보험자에 종속되는 피보험자입니다.
    - 바. 전환전 계약: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 (1) 종신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2) 상속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3) 확정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 급일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 용어해설

#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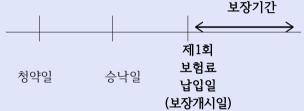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 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 제1회 보험료 ]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 공시이율의 공시 ]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제 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용어해설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 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 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 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 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제 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 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 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 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 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 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화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 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 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전환을 신청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 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Z 1]                  |                 | 정액형(10 ~ 40년, 100세 보증)  |
|-----------------------|-----------------|-------------------------|
| <del>종</del> 신<br>연금형 | (개인계약,<br>부부계약) | 체증형(10 ~ 20년 보증)        |
| 400                   | T-T/  -1/       | 소득보장형(10 ~ 20년 보증)      |
|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                  | 금형(5년, 10       | )년, 15년, 20년, 30년, 50년, |
| 60년)                  |                 |                         |
| 상속연금형                 |                 |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제 8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하며,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 2. 부부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고명 이 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 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 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계약과 부부계약의 책임준비금(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계약 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

무

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에 관한 신 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 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단,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 신 청은 제6항에 따른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전 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주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⑥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 용어해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제 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 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 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 2.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지급기간 이 종료된 경우
- ②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0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

#### 제12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 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 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최저보증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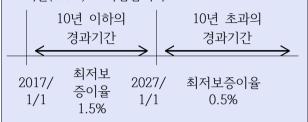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 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1.5%)로 적립합니다.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윸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0.5%)로 적립합니다.



####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외부지표금리 ]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 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제13조 [ 해지환급금 ]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2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15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연금(제3조)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 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1) 개인계약

| 지급       | 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br>에 살아 있을 때   |
|----------|-----|--|
|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br>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지급<br>금액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br>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까지는 보증<br>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br>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br>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20년) |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

|          |           | 일에 살아 있을 때   |
|----------|-----------|--|
|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br>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br>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지급<br>금액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br>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br>체증률(5%,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br>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br>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20년) |
|          | 소득<br>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br>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까지는 보<br>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br>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br>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20년)     |

# - 종피보험자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br>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br>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br>해당액의 50%를 지급                           |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br>에 살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br>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br>액을 지급<br>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br>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br>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br>시금으로 지급 |

#### 다. 확정연금형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br>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의<br>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br>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br>안 지급                    |

#### 라. 상속연금형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br>에 살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br>따라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며,<br>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계<br>약자적립금 지급 |

- (주) 1.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 증이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 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 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 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보증지급기 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

- 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 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 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 습니다.
- 8.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 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 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 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 구분                 |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                    | 지급사유가<br>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br>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br>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br>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 연금<br>(제3조)        | 청구일<br>까지의<br>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br>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br>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br>이 없게 된 날) 이후 | 1년 이내 : 공시<br>이율의 50%<br>1년 초과기간 :<br>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br>대출이율                             |
| 해지<br>환급금<br>(제13조 | , , , , , , ,            | ㅏ 발생한 날의 다음<br>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br>이율의 50%<br>1년 초과기간 :<br>1% |
| 제1항)               | 0, 2                     | !의 다음 날부터<br>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br>대출이율                             |

- (주)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 특약(거치형)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거치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제 1조[목적]<br>제 2조[용어의 정의]   | 330                     |
|-----|--|-------------------------|
|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
|     | 제 6조 [보험금의 청구]<br>제 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br>제 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br>제 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340<br>341              |
| 제3관 |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 실]<br>344<br>345<br>347 |
| 제4관 | <b>보험료의 납입</b><br>제15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 349                     |

| 세5관 |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 <del>급</del> 금 능                         |        |
|-----|---|--------|
|     | 제1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 4      |
|     | 서면동의 철회권 ] 34   | 9 .    |
|     |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     | 제18조 [해지환급금] 35                                       | 0      |
|     | 제19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35                                  | 1      |
|     | 제20조 [보험계약대출] 35                                      | 2      |
|     | 제21조 [ 배당금의 지급 ] 35                                   | 3      |
|     |   |        |
|     |   |        |
| 제6관 | 기타사항  | :      |
| 제6관 | <b>기타사항</b><br>제22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br>: |
| 제6관 |   | 3      |
| 제6관 | 제22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br>35<br>[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35 | :      |
| 제6관 | 제22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br>35                       | 4      |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거치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 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주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 람을 말합니다.
- 바.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피보험자가 아니라 주 피보험자에 종속되는 피보험자입니다.
- 사. 전환전 계약: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

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 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 로 합니다.

- (1) 종신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2)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 일까지
- (3)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4.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전환일시금: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보험료로 서,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 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전환일시금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 초과

인 경우에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 무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 배도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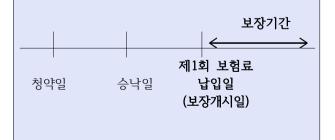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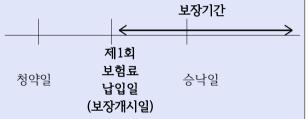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 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 제1회 보험료 ]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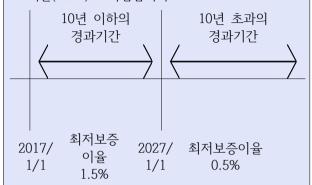
#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 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2017년 1월 1일, 현재: 202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육(0.5%)이 아닌 최저보증
  -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 이율(1.5%)로 적립합니다.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

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 이윸(0.5%)로 적립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 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 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사망보험금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

# 제 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14조(특약의 소멸) 제1호 내지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 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제 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

- 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용어해설

####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 심신상실(心神喪失)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제 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

무

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용어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 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 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 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 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제 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 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 외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10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 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화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 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 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개시일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 정액형(10 ~ 40년, 100세    |  |
|-------|-------------|-----------------------|--|
|       | 보증기간부       | 보증)                   |  |
| 종신연   | (개인계약,      | 체증형(10 ~ 20년 보증)      |  |
| 금형    | 부부계약)       | 소득보장형(10 ~ 20년 보증)    |  |
|       |             | 보증금액부                 |  |
| 확정연   | 금형(5년, 10년, | , 15년, 20년, 30년, 50년, |  |
| 60년)  |             |                       |  |
| 상속연금형 |             |                       |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가.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나.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 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 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 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 면,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 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계약과 부부계약의 책임준비금(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계약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에 관한 신

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단,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 신청은 제6항에 따른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주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⑥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제12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 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 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 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 과실 ]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 를 말합니다.

##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자를 말합니다.

## 제13조 [ 특약내용의 변경 등 ]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전환일시금
  -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 3. 계약자
  - 4. 기타 특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 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으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 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

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14조 [ 특약의 소멸 ]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 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 금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5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2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7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

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 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 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 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용어해설

##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외부지표금리 ]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 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제18조 [ 해지환급금 ]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사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7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 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 지 않습니다.

## 제19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 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회사에 실제 납입한 전환일시금 및 추가납입보험료의총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 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일시금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⑥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해설

##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전환일시금 및 추가납 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 [위험보험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 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제20조 [ 보험계약대출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22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사망보험금(제3조 제1호)

|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br>을 때    |
|------|-----------------------------------|
| 지급금액 |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br>자적립금 |

# ■ 연금(제3조 제2호)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 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1) 개인계약

| 지급사유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
|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br>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
| 지급<br>금액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br>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보증<br>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br>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          | 소득<br>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br>까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br>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br>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20년)     |  |  |

# 2) 부부계약

# - 주피보험자

| 지급사유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br>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br>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 ~ 40년/100세)   |
| 지급<br>금액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br>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보증<br>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br>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소득<br>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br>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br>까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br>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br>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br>(보증지급기간: 10~20년)       |

# - 종피보험자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br>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해당<br>액의 50%를 지급                            |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br>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br>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

|  | 을 지급                     |
|--|--------------------------|
|  |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
|  |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 |
|  | 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 |
|  | 로 지급                     |

## 다. 확정연금형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의 매년 계약해<br>당일에 지급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br>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br>안 지급           |

## 라. 상속연금형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br>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br>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br>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br>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

- (주)1.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액은 직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액은 과거 '해당시점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 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

- 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 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 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 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 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 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 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8.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 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 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 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 액을 지급합니다.

# (별표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

| 구분                 | 적립기간   |  | 지급이자                                 |  |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br>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사망<br>보험금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br>6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4.0%)             |  |
| (제3조<br>제1호)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br>90일 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6.0%)             |  |
|                    | 지급기일의  |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 가산이율(8.0%)             |  |
|                    | 지급사유<br>가 발생한<br>날의 다음<br>날부터<br>청구일까<br>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br>일(다만, 이 특<br>약이 더는 효<br>력이 없게 된<br>경우에는 효력<br>이 없게 된 날)<br>이내 | 공시이율                                 |  |
| 연금<br>(제3조<br>제2호) |  | 보험기간 만기<br>일(다만, 이 특<br>약이 더는 효<br>력이 없게 된<br>경우에는 효력<br>이 없게 된 날)<br>이후 | 1년 이내 : 공시<br>이율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해지<br>환급금<br>(제10조 | 다음 날부터   | 가 발생한 날의<br>거 청구일까지의<br>기간   | 1년 이내 : 공시<br>이율의 50%<br>1년초과기간 : 1% |  |
| (제18조<br>제1항)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주)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 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규 조항 정리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단,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 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 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 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 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89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 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의료법

### 제2조(의료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사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 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 무보조에 대한 지도

##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

- 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 무를 정하여 고시함 수 있다.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 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 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 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 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 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 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 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 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 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 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 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 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 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하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 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 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①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 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 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 (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 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 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계약·공제계약 및 보험금·공제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공제조합
- 나. 공제회
-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 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9.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 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 의 특성
-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 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 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 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 공받기 위한 목적
  -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6. 「민법」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부터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 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 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①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 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 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 래 등 상거래를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 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

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 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 1.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3.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2호

-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 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춬혘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 보험업법

##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 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

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 게 분배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 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1호

-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가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 (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 (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9조(<del>등록</del>)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 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7. 발행소의 소재지
-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 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 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 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 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 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 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 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 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 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 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 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 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 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 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 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 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

- 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 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 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7.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 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 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 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 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 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 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 지역보건법

####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 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보건의료원)

① 보건소 중「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① 시정「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 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진찰·검사
  -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홬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 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 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 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하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 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 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 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 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 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 가변 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 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 1) 지역가입자인 경우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약사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 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 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 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 [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 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이하 생략)

#### 의료급여법

#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찰·검사
  -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 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 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 1. 삭제 <2005.7.5>
  - 2. 삭제 <2005.7.5>
- ② 삭제 <2005.7.5>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 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 자가 부담한다.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 라 한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 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 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5.2.3.>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 험계약
  -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 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한 후 인출할 것
  -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dfrac{$  연금계좌의 평가액  $}{(11-$ 연금수령연차)}  $imes \dfrac{1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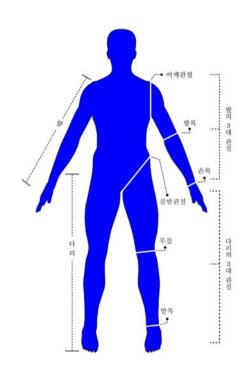
-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1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 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5.2.3.>
- ⑦ 삭제 <2015.2.3.>
- ⑧ 삭제 <2015.2.3.>
- ⑨ 삭제 <2015.2.3.>
- ⑩ 삭제 <2015.2.3.>
- ① 삭제 <2015.2.3.>

#### 모자보건법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 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신체부위의 설명도





# ■ 고객센터 주소록

| 고객센터명 | 도로명주소                        | 연락처          |              |
|-------|------------------------------|--------------|--------------|
| 여의도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17층 | 02-3787-7385 | 02-3787-7389 |
| 신설동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0, 1층           | 02-2253-2857 | 02-2253-2858 |
| 부 산   |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ABL생명빌딩 1층 | 051-645-5399 | 051-637-4546 |

# ■ 고객센터 업무시간 안내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3:30 현금 취급 외 업무는 오후 5시 30분까지

# ■ 고객센터 바쁜 날(시간) 안내

매일: 12:30 ~ 13:30 / 14:30 ~ 15:30

매주:월요일, 금요일

매월: 1일, 25일, 말일, 연휴 전/후

※ 바쁜 날(시간)을 피해 방문하시면 여유있는 보험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보장하는 ABL생명

# 고객을위한 차별화된선진보험 상품과다양한 영업망

-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선진금융기법과 노하우로 변액 · 보장성보험부터 연금 · 저축성보험까지 40여종의 폭넓은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 보장
- 선진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고객중심 상품
  - 변액연금보험의 '금융자산운용방법' : 보험업계 최초로 특허 획득
  - 리스크컨트롤펀드: 중위험·중수익 추구형 시스템운용펀드
  - 무)하모니변액연금보험: 계약별 자산재배분시스템으로 수수료 없이 최저연금액 보증
  - ABL생명 빅데이터국내주식형펀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종목 선별 가능
-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더 많은 고객의 니즈 보장
  - 유병자 · 고령자 대상 종신, 건강, 입원비, 치매 보장 간편심사보험
  - 임플란트 치료 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하는 치아보험
  - 저해지환급형, 무해지환급형 등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줄인 종신보험
  - 위안화 표시 저축보험
-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다각화된 영업채널
  - 역량있는 2,400여 명의 FC(전속설계사)를 비롯한 방카슈랑스, GA(독립법인대리점), GB(법인영업), 인터넷보험 등 다양한 판매 채널 보유

# 업계선도적인 디지털기반스마트 금융서비스

- 업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모바일 전자서명 청약률 (90.2%, 2018년 12월 말 기준)
- 업계 최초 화상고객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고객 상담
- 업계 최초 신분증 진위여부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
- 고객에게 실시간 정확한 보험 보장분석을 제공하는 자동보험보장분석 서비스 제공
- 모바일 고객센터 홍채·지문 인식



- 1954년 설립,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60여년의 역사와 전통
- 든든한 재무 기반을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안방보험그룹의 자회사



**★BL**생명을 만나보세요.